

2026 년 CPE 교재 정오표

권	쪽수	줄수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1	27	하7	생애평균소득의 40%를	생애평균소득의 43%를	
1	27	하1	30인 미만	30인 이하	
1	31	상4	2034년 기금이	2035년 기금이	
1	34	상8	소득비례 노령연금으로	소득기반 노령연금(소득연금과 프리미엄연금으로 구성)	
1	34	하1	노인세대의 노령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사용되고 나머지 2.5%는 가입자 명의의 적립식 개인연금계좌에 이체된다,	노인세대의 노령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사용되고(소득연금) 나머지 2.5%는 가입자 명의의 적립식 개인연금계좌(프리미엄연금)에 이체된다,	
1	35	상7	일시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급되고 그 이후에는 물가상승률과 실질소득상승률을 합산치로 조정된	상향된 후 물가상승률과 실질소득상승률 합산치로 조정된	
1	35	상12	본인 연령의 기대여명	본인 연령에 해당하는 기대여명	
1	35	상16	출산을 저하와 고령화로 국민연금의 적립금이 2055년에(국회예산정책처) 고갈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 개편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연금보험료를 13%로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을 저하와 고령화로 인하여 2064년에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1	36	상9	2025년 7월부터 최소 12%로 증가한다.	12%이다.	
1	36	하7	기금에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은 매우 다양하지만, 기금이 큰 폭의 손실을 입었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타깃데이트 펀드나 밸런스펀드 등 분산투자상품이 디폴트옵션상품(MySuper 라고 함)으로 승인되면서 디폴트옵션상품 투자 비중이 50% 이상으로 급증하였다.	기금(super)은 사용자가 선택하지만, 가입자가 기금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하지 않을 경우, 이직자는 전 직장에서 가입한 기금(Stapled Fund), 신규 취업자는 사용자가 지정한 기금에 자동가입된다. 가입자가 기금이 제공하는 상품을 지정하지 않으면, 그 기금이 운용하는 디폴트옵션상품인 마이슈퍼(MySuper)에 자동투자된다.	
1	51	하11	40%로서 가입기간 1년마다 가입자 평균 소득의 1%	43%로서 가입기간 1년마다 가입자 평균 소득의 1.075%	
1	51	하5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저소득 노령가구는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	
1	52	상1	2023년 말 65세 이상 고령인구 971만	2024년 말 65세 이상 고령인구 1,023만	

			1,536명 중 67%인 650만	6,150명 중 66%인 675만 8,487명만	
1	52	상3	3.0%인 29만여명이	4.0%인 40만 7천 여명이	
1	52	하6	'<표 2-1> 연금지급률' 행 수정 9%	13%('26년 9.5%에서 매년 0.5%p 상승)	
1	52	하5	'<표 2-1> 연금지급률' 행 수정 4.5%	13%('26년 4.75%에서 매년 0.25%p 상승)	
1	52	하3	1.075%('22년) →1%('28년~)	1.075%	
1	53	상7	인 경우는	인 연금제도에서는	
1	57	하4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1인 단독가구가 월 228만 원, 부부가구가 월 364만 8천 원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1인 단독가구가 월 247만 원, 부부가구가 월 395만 2천 원	
1	57	하1	2025년 기준연금액은 34만 2,510원	2026년 기준연금액은 34만 9,700원	
1	58	상3	2023년 말 65세 이상 노령인구 971만 명의 67%인 650만 명만	2024년 말 65세 이상 노령인구 1,023만 명의 66%인 675만 명만	
1	58	상5	29만 1천 명	40만 7천 명	
1	58	하9	올해 기초연금에서 탈락되었더라도 내년에 다시 신청할 필요가 있다.	기초연금에서 탈락되었더라도 해가 바뀌면 다시 신청할 필요가 있다.	
1	60	상5	외국국적 배우자와	외국국적 배우자(체류기간 2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국적취득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수급 자격 박탈)와	
1	62	상13	2025년 112만 원	2026년 116만 원	
1	63	상6	장해연금	장애인연금	
1	63	상13	수령액 전액이	수령액 전액(월평균 수령액)이	
1	63	하4	2024. 3. 30.	2025. 3. 30.	
1	64	상2	2025년	2026년	
1	64	상6	2024년 기본공제액 112만 원보다	2026년 기본공제액 116만 원보다	
1	64	상7	(200만 원 - 112만 원) + 30만 원 = 91만 6천 원	(200만 원 - 116만 원) + 30만 원 = 88만 8천 원	
1	64	상8	93만 원	88만 8천 원	
1	64	하1	올해 4월, 신규 신청자는 전년 11월부터 재산가액에 포함된다	금년 4월, 신규 신청자는 전년 11월부터 재산가액에 포함된다	
1	65	상11	기초연금 수익자	기초연금 수급자	
1	65	하4	특례시는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	특례시는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	

				화성시	
1	65	상13	수급자	수익자	
1	67	상4	2025년 기준 단독가구 월 251만 2,677 원, 부부가구 월 304만 8,847원)을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월 267만 9,518원, 부부가구 월 324만 7,369원)을	
1	68	상1	마이너스대출, 기업대출 및 카드는	마이너스대출과 만기 1년 이내 기업대출 및 카드는	
1	70	상8	220만 원인 단독가구는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없다. 소득평가액이 240만 원	230만 원인 단독가구는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없다. 소득평가액이 250만 원	
1	70	상9	220만 원(2024년 기준)	247만 원(2026년 기준)	
1	70	하4	장해연금	장애연금	
1	72	상11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	
1	72	하8	(표 밑에 작은 글씨로 각주 추가)	*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150%를 초과하더라도 A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75% 이하인 경우 기준연금액	
1	74	하8	2025년 소득인정액이 228만 원인 단독가구가 기준연금액 34만 2,510	2026년 소득인정액이 247만 원인 단독가구가 기준연금액 34만 9,700	
1	74	하7	262만 2,510원이다.	281만 9,700원이다.	
1	74	하6	반면 소득인정액이 229만 원인	반면 소득인정액이 248만 원인	
1	74	하5	228만 원인 가구와 229만 원인	247만 원인 가구와 248만 원인	
1	75	하5	가구는 2025년 기준으로 최소한 기준연금액(342,510원)의 20%인 68,500원(1인당 34,250원)을	가구는 2026년 기준으로 최소한 기준연금액(349,700원)의 20%인 69,940원(1인당 34,970원)을	
1	76	하11	소득인정액은 200만 원(국민연금급여액 등 60만 원 포함)이다. 2025년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228만 원, 기준연금액은 34만 2,510원이다. 박희남씨의 2025년	소득인정액은 220만 원(국민연금급여액 등 60만 원 포함)이다. 2026년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247만 원, 기준연금액은 34만 9,700원이다. 박희남씨의 2026년	
1	76	하8	175.2%	171.6%	
1	76	하7	장해연금	장애연금	
1	76	하6	34만 2,510원이다	34만 9,700원이다	
1	76	하4	200만 원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234만 2,510원)이 선정기준액(228만 원)	220만 원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254만 9,700원)이 선정기준액(247만 원)	
1	76	하11	장해연금	장애연금	
1	76	하13	장해연금	장애연금	

1	76	하2	228-200 = 28만 원이 단독가구 최저연금액인 기준연금액의 10%(3만 4,351원)보다 크므로 박희남씨는 28만 원을 기초연금으로 수령한다.	247-220 = 27만 원이 단독가구 최저연금액인 기준연금액의 10%(3만 4,970원)보다 크므로 박희남씨는 27만 원을 기초연금으로 수령한다.	
1	77	상2	= (1,850,000+342,510)-2,100,000 = 92,510. 따라서 기초연금액 = 342,510-92,510 = 25만 원	=(2,200,000+349,700)- 2,200,000 = 79,700. 따라서 기초연금액=349,700-79,700 = 27만 원	
1	77	상3	2,200,000	2,470,000	
1	77	상7	330만	360만	
1	77	상8	34만 2,510원이고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부부가구 기준 364만 8천 원일 때	34만 9,700원이고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부부가구 기준 395만 2천 원일 때	
1	77	상10	(330만 원)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364만 8천 원)보다	(360만 원)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395만 2천 원)보다	
1	77	하12	23만 3,765원	24만 4,550원	
1	77	하9	342,510 - (2/3) × 420,000] + 342,510	349,7000 - (2/3) × 420,000] + 349,700	
1	77	하8	23만 3,765원	24만 4,550원	
1	77	하7	34만 2,510원	34만 9,700원	
1	77	하2	= 233,765 × 20% = 46,753원	= 244,500 × 20% = 48,910원	
1	77	하1	342,510 × 20% = 68,502원	349,700 × 20% = 69,940원	
1	78	상2	= (233,765 - 46,753) + (342,510 - 68,502) = 461,020원	= (244,550 - 48,910) + (349,700 - 69,940) = 475,400원	
1	78	상4	330만 원인데 부부감액 후 기초연금액(46만 1,020원)을	360만 원인데 부부감액 후 기초연금액(47만 5,400원)을	
1	78	상6	= 3,648,000 3,300,000 = 348,000원	= 3,952,000 - 3,600,000 = 352,000원	
1	78	상7	기초연금액(46만 1,020원)에서 소득역전방지감액(3,300,000 + 461,020 - 3,648,000 = 113,020원)을	기초연금액(47만 5,400원)에서 소득역전방지감액(3,600,000 + 475,400 - 3,952,000 = 123,400원)을	
1	78	상8	6만 8,520	6만 9,940	
1	78	상9	34만 8천 원이다	35만 2천 원이다	
1	78	하4	34만 8 천원을	35만 2천 원을	
1	78	하2	348,000 × 233,765 ÷ (233,765 + 342,510) = 14만 1,1664원	352,000 × 244,550 ÷ (244,550 + 349,700) = 14만 4,858원	
1	78	하1	348,000 × 342,510 ÷ (233,765 + 342,510)	352,000 × 349,700 ÷ (244,550 + 349,700)	

			= 20만 6,834원	= 20만 7,142원	
1	79	상3	부동산(일반재산) 공제액(대도시 1억 3,500만 원)이 금융재산 공제액(2천만 원)보다 높음	삭제	
1	79	상13	10. 고급승용차(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는 차량가액 전체가 소득으로 환산된다	10. 고급승용차(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10년 이상, 장애인 소유, 생업용 제외)는 차량가액 전체가 소득으로 환산된다	
1	79	하2	최대 11,000원이	요금의 50%(11,000원 한도)가	
1	80	하2	다른 공적연금의 수급권자는	다른 공적연금의 수급권자는(공적연금연계 신청자 제외)	
1	81	하7	2025년	2026년	
1	81	하2	개인 사정으로	개인 사정을 이유로	
1	82	하5	[국민연금 의무가입에서 제외되는 사람 표 하단에 추가	※ 노령연금 수급권은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하고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한 경우 발생하지만,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은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여 승인이 된 경우에 발생한다.	
1	86	상3	9%	13%(2026년 9.5%를 시작으로 매년 0.5%p씩 증가하여 2033년 이후 13%)	
1	86	상4	가입자와 사용자가 4.5%씩 연금보험료를 납부한다.	가입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1	86	상3	가입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를 부담금, 사용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를 기여금이라고 한다.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는 부담금이고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는 기여금이라고 한다.	
1	88	상8	추후납부를 신청한 시점의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에	납부 기한(분할납부를 포함하여 추납신청서상 추납보험료를 납부하는 달의 말일)이 속한 달의 연금보험료에	
1	89	하11	소득(2024년 기준 270만 원) 미만인	소득(2025년 기준 270만 원) 미만인	
1	89	하10	4,300만 원	4,300만 원(2025년 기준)	
1	89	하5	사용자보험료(4.5%) 및 근로자보험료(4.5%)의	사용자보험료 및 근로자보험료의	
1	90	상2	동일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동일하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1	90	상4	적용되지 않고	적용되지 않고(근로자 10인 이상은 40%)	
1	90	상11	2025년 기준 103만 원	2026년 기준 106만 원	

1	90	하8	이하인 저소득	미만인 저소득	
1	90	하7	지역가입자로서 사업중단, 실직, 휴직의 경제적 사유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는 사람이 연금보험료 납부 재개 및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가입자	기준소득월액이 80만원(2026년 기준) 이하인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1	90	하4	제외된다.	제외된다. 또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과 중복 지원은 금지된다.	
1	90	하3	지원받는 금액은 가입자의	2025년 이전 지원을 받고 있는 가입자의 경우	
1	90	하3	기준소득금액(2025년 103만 원)	기준소득금액이 106만 원(2026년 기준)	
1	92	상3	2024년 기준	2025년 기준	
1	93	상6	2025년	2026년	
1	93	상7	40만 원과 637만 원으로 2024년 대비 3.3% 증가하였다.	41 원과 659만 원으로서 2025년 7월부터 1년 간 적용된 금액(하한액 40만 원, 상한액 637만 원) 대비 3.4% 증가하였다.	
1	93	그래프	그래프 첫번째 평평한 부분 위에 '하한액', 두번째 평평한 부분 위에 '상한액' 기재		
1	94	상5	증액시켜	증액하여	
1	96	하11	수령하는 연금액이다.	수령하는 노령연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이다.	
1	96	하6	국민연금법은 소득대체율 40%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소득대체율 40%에 해당하는 비례상수는 1.2 이다.	2025년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소득대체율이 43%로 상향되었는데 이에 해당하는 비례상수는 1.29 이다.	
1	97	상8	= 기본연금액 × (0.05 × N) + 부양가족 연금액	삭제	
1	97	하8	국민연금이 목표로 하는 소득대체율 40%에 해당하는 비례상수 1.2를 대입하고	국민연금이 소득대체율 43%에 해당하는 비례상수 1.29를 대입하고	
1	97	하6	1%	1.075%	
1	97	하3	1%	1.075%	
1	97	하2	20%, 40년 동안 가입한 사람은 본인 평균소득의 40%를	21.5%, 40년 동안 가입한 사람은 평균소득의 43%를	
1	98	상1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2026년부터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1	98	상2	기준으로 40%로	기준으로 43%로	

1	98	상3	40%	43%	
1	98	상4	40%	43%	
1	98	상15	2024년의 A값은 308만 9,062원(2025년	2025년의 A값은 319만 3,511원(2026년	
1	98	상18	2025년에	2026년에	
1	98	하5	표 2-8	첨부 1 표로 대체(적색 수치만 수정)	
1	99	상9	2012년 1월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2021년 12월까지 기준소득월액 100만 원에 해당하는	2013년 1월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2022년 12월까지 기준소득월액 100만 원 에 해당하는	
1	99	상10	2025	2026	
1	99	상11	139만	138만	
1	99	상13	표 2-9	첨부 2 표로 대체(적색 수치만 수정)	
1	100	상9	6개월	복무기간(12개월 한도)	
1	100	상12	6개월에 대한	가입기간에 대한	
1	100	하4	2명인 경우 12개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12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기간이다(최대 50개월).	2명인 경우 자녀 1명당 12개월, 자녀가 3 명 이상인 경우 24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 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기간이 다.	
1	101	하8	기본연금액	노령연금액	
1	101	하7	기본연금액	노령연금액	
1	101	하4	기본연금액	노령연금액	
1	101	하8	40%	43%	
1	102	상5	'08~'27	'08~'25	
1	102	상5	50%	41.5%	
1	102	상5	1.5	1.245	
1	102	상6	'28~ 40% 1.2	'25 43% 1.29	
1	102	상7	표 2-10의 기간 칼럼의 '25	'25~	
1	102	하4	비례상수 값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하향조정되고 2028년 이후에는 1.2로 일 정하다.	비례상수 값은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하향조정되고 2025년 이후에는 1.29로 일 정하다.	
1	103	상11	2025년	2026년	
1	103	상12	2025년	2026년	
1	103	상14	300,330	306,630	

1	103	상15	200,160	204,360	
1	103	하2	소득월액이 A값을 초과하면	소득월액이 A값을 200만 원 이상 초과하면	
1	104	상4	2025년의 소득월액이 A값(2025년 308만 9,062원)을 초과하면, 노령연금이 감액된다.	2026년의 소득월액이 A값(2026년 319만 3,511원)을 초과하면 초과소득월액의 200만 원 미만인 경우 노령연금은 감액되지 않지만, 200만 원 이상인 경우 감액된다.	
1	104	상5	월 410만 6,907원(연 4,928만 2,888원)	월 632만 2,116원(연 7,586만 5,402원)	
1	104	상9	100만 원 미만 초과소득월액의 5% 0~5만 원 미만	200만 원 미만 0 0	
1	104	상10	100 만 원 ~ 200만 원 미만 줄(행)	해당 줄(행) 전체 삭제	
1	104	상11	표 2-13 노령연금 감액 산식 밑줄 0	감액 없음	
1	106	상1	2025년에	2026년에	
1	106	상3	68세 미만	67세	
1	109	상1	2025년	2026년	
1	109	상2	2027년	2028년	
1	109	상2	2028년	2029년	
1	109	상11	때문이다.	때문이다. (새문단으로) 조기노령연금 또는 노령연금을 연기하여 수령하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기본연금액은 수급자의 수급개시 연령에 확정된 기본연금액을 사망 시 까지의 물가상승률로 조정한 금액이다. 다시 말하면, 노령연금을 조기에 수령하거나 연기하여 수령하더라도 유족연금액은 변동하지 않는다.	
1	112	상4	수급권이 발생한(수급개시 연령) 후 10년 간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멸된다	수급권이 발생한(수급개시 연령) 후 5년 또는 지급연령(60세) 도달 후 10년 간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멸된다	
1	116	상17	군복무를	6개월 이상 군복무를	
1	116	상18	군복무기간	군복무기간(12개월 한도)	
1	116	하9	월 410만 6,907원(2025년	월 632만 2,116원(2026년	
1	116	하8	(조기)노령연금은 지급이 정지되거나 감	조기노령연금은 지급이 정지되지 않고 A	

			액되지 않는다.	값 초과 소득월액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 노령연금은 감액되지 않는다.
1	120	상8	월평균 금액을 올해의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사용하여	월평균 금액에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사용하여
1	121	하9	(2024. 5월~ 2025. 4월까지 적용 금액 552만 원)의	(2025. 5월~ 2026. 4월까지 적용 금액 571만 원)의
1	125	하6	1%이다.	1.075%이다.
1	129	상7	103.44	103.44%
1	129	상8	103.44	103.44%
1	133	상6	제정되어 시행된	시행된
1	137	하4	19세	25세
1	138	상11	2014년 1월 1일 임용되어 2024년	2017년 1월 1일 임용되어 2025년
1	140	상2	2010. 1. 1일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21. 6. 30일	2015. 1. 1일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25. 6. 30일
1	140	상5	2021. 6. 30일에	2025. 6. 30일에
1	140	상6	400만 원	500만 원
1	140	상8	138개월(11.5년), 총 318개월(26.5년)	186개월(15.5년), 총 366개월(30.5년)
1	140	상10	1기간 퇴직수당: 250만 원 × 26.5년 × 60% × 180개월 ÷ 318개월 = 2,250만 원	1기간 퇴직수당: 250만 원 × 30.5년 × 60% × 180개월 ÷ 366개월 = 2,250만 원
1	140	상11	400만 원 × 26.5년 × 39% × 138개월 ÷ 318개월 = 1,794만 원	500만 원 × 30.5년 × 39% × 186개월 ÷ 366개월 = 3,022만 5천 원
1	140	상12	22,500,000 + 17,940,000 = 4,044만 원	22,500,000 + 30,225,000 = 5,272만 5천 원
1	141	하7	2024년 평균연금월액은 274	2025년 평균연금월액은 280
1	144	하8	9%/4.5%	13%/6.5%(2033년)
1	144	하7	(2024.7~) 37만 원 883만 2천 원	(2026.7~) 659만 원 913만 6천 원
1	144	하6	308만 9,062원 552만 원	319만 3,511원 571만 원
1	144	하5	40%	43%
1	144	하4	1.0%	1.075%
1	161	하3	외란, 반란, 이적 등으로 공고	외환, 반란, 이적 등으로 금고
1	182	상12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하여야 한다(해당 연금공단 홈페이지 업로드 가능)

1	184	하8	2025년	2026년	
1	185	상8	2022년	2025년	
1	185	상9	2023년 1월 1일 일시금으로 6,000만 원을	2026년 1월 1일 일시금으로 7,200만 원을	
1	185	상11	2022. 12월까지의 총개월수 = 252개월	2025. 12월까지의 총개월수 = 288개월	
1	185	상12	2022. 12월까지의 총개월수 = 288개월	2025. 12월까지의 총개월수 = 324개월	
1	185	상13	6,000만 원 × 252개월 ÷ 288개월 = 5,250만 원	7,200만 원 × 288개월 ÷ 324개월 = 6,400만 원	

첨부 1

연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만원) (a)	소비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누적상승률(b)	연금수급직전 물가수준금액(만원) (c=a x b)
2025	322.0	104.4	1.000	322
2024	314.0	102.3	1.0210	321
2023	302.0	100.0	1.0445	315
2026년 적용 A 값(3년 평균)				319

첨부 2

연도	A 값(만원)	재평가율(a)	기준소득월액 (만원)(b)	2025 말 물가기준 기준소득월액 (만원)(a x b)
2013	198	1.611	100	161
2014	204	1.562	100	156
2015	211	1.517	100	152
2016	218	1.467	100	147
2017	227	1.407	100	141
2018	236	1.355	100	136
2019	244	1.31	100	131
2020	254	1.257	100	126
2021	268	1.191	100	119
2022	286	1.116	100	112
2023	299	1.068		
2024	309	1.034		
2025	319	1.000		
2026년에 적용되는 평균기준소득월액(B 값)				평균(B 값) = 138

제3장 사적연금제도

	쪽수	줄수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1	190	상4	2023년 말 382조 4천억 원에	2024년 말 431조 7천억 원에	
1	190	상5	31.5% 증가율로 가장 높았고 DC형 퇴직연금이 연 15.3%로	31.2% 증가율로 가장 높았고 DC형 퇴직연금이 연 15.5%로	
1	190	상6	11.1%	9.2%	
1	190	상7	2018년 말 63.8%에서 2023년 말 53.7%로	2023년 말 53.7%에서 2024년 말 49.7%로	
1	191	상2	표 3-1	첨부의 표 3-1로 대체	
1	191	상7	2023	2024	
1	190	상8	53%인 675만	54%인 697만	
1	191	상10	91.7%에 달하지만, 10~29인 사업장은 56.8%, 5~9인 사업장은 32.3%, 5인 미만은 10.4%에 불과하여 중소기업일수록 퇴직연금 가입률은 저조한 편이다.	92.1%에 달하지만, 10~29인 사업장은 57.3%, 5~9인 사업장은 32.7%, 5인 미만은 10.6%에 불과하여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퇴직연금 도입률은 저조한 편이다	
1	194	상5	2025년	2026년	
1	195~198		(3) 퇴직연금 지배구조 전체 내용을 첨부 2로 대체(최근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가시화됨에 따라 전체 내용 업데이트)		
1	200	상14	- 주식(DB형 퇴직연금금은 비상장주식), 투자부적격등급채권, 사모펀드, 과위험평가액 40% 초과 파생형펀드(합성 ETF 제외), 최대손실률 40% 초과 파생결합증권 등은 투자 금지	- 주식(DB형 퇴직연금금은 비상장주식), 투자부적격등급채권, 사모펀드, 위험평가액 40% 초과 파생형펀드(합성 ETF 제외), 최대손실률 40% 초과 파생결합증권 등은 투자 금지	
1	213	하4	273만	281만	
1	213	하2	27만 3천	28만 1천	
1	215	상15	5천만 원(1억 원 한도는 2026년부터 적용 예정)	1억 원	
1	221	상13	2025년	2026년	
1	224	상11	2021년에 퇴직하였고 2021	2022년에 퇴직하였고 2022	

1	224	상 12	2025년에 연금수령 개시	2026년에 연금수령 개시	
1	224	상 16	2021년에 퇴직하였으므로	2022년에 퇴직하였으므로	
1	224	상 17	2021년	2022년	
1	224	상 19	2021	2022	
1	224	상 20	연금개시일인 2025년	2026년	
1	224	하1	2021년의 연금수령연차는 1년차이다. 따라서 2025년의 연금수령 개시 연차는	2022년의 연금수령연차는 1년차이다. 따라서 2026년의 연금수령 연차는	
1	225	상1	IRP계좌 또는 연금저축계좌에서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인출하면 수령 개시 후 첫 10년 동안 인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연퇴직소득세의 70%만 납부한다. 실제 수령연차 기준 10년을 초과 하여 인출한 금액에 대한 이연퇴직소득세는 60%만 납부한다. 연금저축계좌로 이전된 퇴직금 여를 연금으로 수령한다는 것은 55세 이후에 10년 이상에 걸쳐 연금인출 한도 이내에서 인출 하는 것을 말한다. 이연퇴직소득세의 60%만 납부하는 10년 초과 여부의 산정은 연금인출 한도 산정식에 적용되는 연금수령연차가 아닌 실제 연금수령연차를 기준으로 한다	IRP계좌 또는 연금저축계좌에 이체된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인출하면 실제 연금수령연차 기준으로 이연퇴직소득세의 절감 폭이 달라진다. 실제 연금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인 경우 이연퇴직소득세의 70%, 11년~20년 이하인 경우 60%, 21년 이상인 경우 50%만 납부한다.	
1	225	상9	김성실씨는 2018년에 퇴직급여가 이체된 IRP계좌에서 연금의 실제 수령연차를 1년차로 하여 연금인출 한도 이내에서 연금을 수령하였다	김성실씨는 연금수령연차 1년차인 2019년부터 퇴직급여가 이체된 IRP계좌에서 매년 연금인출 한도 이내에서 연금을 수령하였다.	
1	225	상 10	2025년 실제 연금수령연차는	2026년 실제 연금수령연차는	
1	225	상 11	2025년	2026년	
1	225	상	2018년에 처음으로 연금을 수령한	2019년에 처음으로 연금을 수령한 이후	

		12	이후 2019년부터 3년 동안 연금 수령을 중단한 후 2022년부터 매년 연금을 수령하였다면 2025년	2020년부터 3년 동안 연금 수령을 중단한 후 2023년부터 매년 연금을 수령하였다면 2026년	
1	225	상 15	2019년부터 3년 동안 연금을 수령하지 않았으므로 2025년 실제 수령연차는	2020년부터 3년 동안 연금을 수령하지 않았으므로 2026년 실제 연금수령연차는	
1	225	하1	실제 연금수령연차 기준으로 11년째 이후 수령하는 경우 60% 적용	실제 연금수령연차 기준 11년~20년 이하는 60%, 21년차 이후에는 50% 적용	
1	226	상 10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인출할 때 10년을 초과하여 인출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연퇴직소득세의 60%만 납부하는데 10년 경과 여부는 실제 연금을 수령하는 연도만 포함하여 판단하기 때문이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인출할 때 실제 연금수령연차 기준으로 11~20년 이하는 이연퇴직소득세의 60%, 21년 이상은 50%만 납부하기 때문이다.	
1	226	하1	이연퇴직소득 인출할	이연퇴직소득을 인출할	
1	227	상2	2024년	2025년	
1	227	상4	2025년	2026년	
1	227	상6	2024년에 연금을 인출하지 않았고 2025년	2025년에 연금을 인출하지 않았고 2026년	
1	227	상7	2025년	2026년	
1	227	상8	2024년	2026년	
1	227	상9	2025년에 수령하는 연금의 과세기간 개시일: 2025년 1월 1일	2026년에 수령하는 연금의 과세기간 개시일: 2026년 1월 1일	
1	227	상 10	2025년	2026년	
1	227	상 11	2025년	2026년	
1	227	상 12	2025년	2026년	
1	227	상 14	2025년	2026년	
1	228	상8	연금개시일: 2026년	연금개시일: 2025년	
1	229	하2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 원 이내의 금액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 원 이내의 금액	

1	230	상6	12%에 해당하는 금액은	12%에 해당하는 금액(첫해 연금인출한도)은	
1	230	하6	퇴직금제도(중간 정산)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제도(중간 정산)	
1	236	상 13	과거에 납입한 개인부담금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올해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 신청을 한 경우 연말정산 때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과거에 납입한 개인부담금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 연말 전에 해당 금융기관에 납입액 전환을 신청하면 연말정산 때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첨부 1

표 3-1 수정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5년평균증가율
확정급여형(DB)	138	153.9	171.5	192.4	205.3	214.6	9.2%
확정기여형(DC)	57.8	67.2	77.6	85.9	101.4	118.4	15.4%
개인형 IRP	25.4	34.4	46.5	57.6	75.6	98.7	31.2%
합계	221.2	255.5	295.6	335.9	382.3	431.7	14.3%

첨부 2

3) 퇴직연금 지배구조

① 기금형제도와 계약형제도

퇴직연금의 지배구조는 기금 운용 및 관리 주체에 따라 기금형제도(Fund-type scheme)와 계약형제도(Contract-type scheme)로 구분된다. 기금형제도는 기업과 분리된 독립적인 수탁법인(Trust)을 설립하고, 해당 법인의 기금운용위원회가 가입자의 이익을 위해 적립금을 총괄하여 운용하는 방식이다. 반면, 계약형제도는 기업이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와 직접 계약을 맺어 제도 운영 및 자산 보관 업무를 위탁하는 형태이다.

기금형 제도를 중심으로 발전한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과 호주다. 미국 민간기업의 대표적인 퇴직연금인 401(k)는 근로자퇴직소득보장법(ERISA)에 따라 주로 금융기관이 설립한 신탁회사(수탁법인)가 기금을 운영하고 공공부문이나 특수직역단체는 별도의 독립적인 수탁위원회(Board of trustee) 또는 수탁기관을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향이 있다. 호주의 DC형 퇴직연금제도인 슈퍼애뉴에이션은 5개(기업형, 산업형, 리테일, 공공형, 자기관리기금) 유형의 퇴직연금기금이 존재하며, 가입자가 본인의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기금을 선택하고 이전할 수 있다.

영국과 일본은 두 제도가 병존하고 있다. 일본의 확정급여형(DB)은 기금형과 계약형을 기업이 선택할 수 있으나, 확정기여형(DC)은 전면 계약형(규약형) 제도만 허용된다. 반면 영국의 경우 DB형과 CDC형(Collective Defined Contribution)은 기금형으로 운영되며, DC형은 복수의 사용자가 가입할 수 있는 마스터 트러스트(Master trust) 중심의 기금형과 보험사 중심의 계약형이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계약형의 경우에도 가입자 보호를 위해 퇴직연금사업자 내부에 독립지배구조위원회(IGC, Independent Governance Committee)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기금형에 준하는 수탁자책무를 이행하고 공시해야 한다.

CDC형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일정한 부담금 납입의무만 지고,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종신연금 형태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가입자 간 장수위험을 공유한다. 또한, 목표 연금지급률을 제시하지만, 단일 기금으로 통합하여 집합운용한 투자성과를 기반으로 연금지급률이 결정되므로 모든 가입자가 투자위험을 공유한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계약형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를 도입하는 형태로 기금형을 예외적으로 도입하였다. 최근 계약형제도의 저조한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한 기금형제도의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2026년 2월 노사정 TF가 기금형제도를 도입하는데 합의하였다. 기금형제도가 도입되더라도 기존의 계약형제도도 병존하는 체제로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② 계약형제도의 운영 프로세스

(196쪽 하9줄 계약형 제도의 운영 프로세스 전체 내용 및 그림 3-1 포함)

③ 기금형제도의 운영 프로세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만 가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형, 퇴직연금사업자가 설립한 퇴직연금전문운용사가 운영하는 금융기관형, 복수의 사용자가 연합하여 설립하는 연합기금형, 퇴직연금공단을 새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공공기관형 등의 형태로 기금형이 도입할 전망이다.

기금형제도 도입 법안의 특징 중 하나는 가입자에게 개별 상품 선택권을 제공하지 않고 개별 가입자의 적립금을 기금으로 통합하여 단일 투자전략을 채택하여 집합운용한다는 점이다(현재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방식). 이는 해외의 DC 기금형 제도가 가입자에게 우선적인 투자상품 선택권(다양한 펀드 라인업 및 디폴트옵션)을 보장하는 것과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

가입자의 선택권이 배제된 집합운용 방식은 기금 전체의 장기수익률 제고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가입자 개개인의 생애주기 특성(특히 은퇴 시기)을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장기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서는 주식 등 위험자산 비중을 높게 유지할 수 밖에 없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글로벌 충격이 발생할 경우 주가 급락으로 인해 은퇴가 임박한 가입자들이 지금까지 축적한 퇴직연금 적립금이 큰 폭으로 훼손되는 '수익률순서위험(Sequence of returns risk)'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 실제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주식 비중이 높았던 은퇴 예정자들은 심각한 타격을 입은 바 있다.

과거 밸런스드펀드 위주로 기금을 운용했던 호주 역시 이러한 위험을 인지하고 심층적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2014년부터는 연령에 따라 위험 자산을 줄여주는 타깃데이트펀드(TDF) 형태를 디폴트옵션(MySuper)으로 허용하였다. 또한, 기금이 설명 자료나 재무상담을 통해 은퇴에 근접한 50대 이상 가입자들이 방어적인 상품으로 이전하도록 적극 권유하고 있다.

기금이 단일 투자전략을 채택하여 집합운용하는 방식은 일부 가입자군(특히 은퇴 임박자)의 이익을 담보로 다른 가입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모든 가입자의 이익만을 위해 기금을 운용한다는 수탁자책무와 충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기금형을 도입하더라도 해외 기금형처럼 가입자가 우선적으로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상품을 선택하도록 하고 이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디폴트옵션에 자동가입시킨 후 이를 기반으로 기금을 집합운용하는 방식으로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3장 사적연금제도 제2절

	쪽 수	줄 수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1	231	상6	구 개인연금	옛 개인연금	
1	232	하6	2023년 말 168.8조 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2025년 말 180.1조 원으로 전년 대비 6.7%	
1	232	하4	68.4%	64.1%	
1	233	상3	표 3-8	표 3-8을 첨부 1 수치로 수정	
1	233	상 10	금융감독원(2023. 12. 31. 현재)	통합연금포털(2024. 12. 31. 현재)	
1	233	상 11	2023년 말 기준 IRP계좌의 적립금은 91조 8천억 원을 기록하여 1년 전 대비 31.1% 증가하였다.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개인이 추가로 납입한 개인부담금뿐만 아니라 퇴사 후 이체된 퇴직급여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IRP계좌 적립금의 금융기관별 점유율은 은행 63.8%, 증권 31.7% 그리고 보험사 4.9%로서 가입자들이 보험사에서 증권사로 계속 계좌를 이전하고 있다. 실적배당상품 투자 비중(전체 32.1%)은 증권사에 개설된 IRP계좌가 51.0%로 가장 높고 은행권이 24.4% 그리고 보험권이 13.1%로 모든 업권에서 증가하고 있다.	<표 3-9>에서 보듯이 2025년 9월 말 기준 IRP계좌의 적립금은 921조 4천억 원을 기록하여 1년 전 대비 32.3% 증가하였다.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개인이 추가로 납입한 개인부담금뿐만 아니라 퇴사 후 이체된 퇴직급여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IRP계좌 적립금의 금융기관별 점유율은 은행 60.6%, 증권 34.4% 그리고 보험사 5.0%로서 증권사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실적배당상품 투자 비중(전체 40.5%)은 증권사에 개설된 IRP계좌가 60.2%로 가장 높고 은행권이 31.4% 그리고 보험권이 15.1%로 모든 업권에서 증가하고 있다.	
1	233	하1	2024. 9. 30.	2025. 9. 30.	
1	238	상2	가능하지만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1	238	상 10	종신연금으로 수령 시: 4.4%(80세 이후 인출시 3.3%), 지방소득세 포함	중도해지가 금지된 종신연금으로 수령 시: 연령에 상관없이 3.3%(지방소득세 포함)	
1	241	상5	필요가 있다.	필요가 있다. IRP계좌 보유상품 중 현물 이전이 가능한 상품 여부는 해당 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242	상 10	2024년 4월 1일에 연금개시 신청을 하였다. 2024년	2025년 4월 1일에 연금개시 신청을 하였다. 2025년	
1	242	상 14	'24/4/1, ..., '24/4/1	'25/4/1, ..., '25/4/1	
1	242	상 15	'25/4/1, ..., '25/3/2	'26/1/1, ..., '26/3/2	
1	242	상 16	'26/4/1, ..., '26/3/3	'27/1/1, ..., '27/3/3	
1	242	상 17	'2/4/1, ..., '2/3/6	'28/1/1, ..., '28/3/6	
1	242	상 18	2024년	2025년	
1	242	상 19	2024/4/1	2025/4/1	
1	242	상 20	2024년	2025년	
1	242	하4	'24/4/1, ..., '24/4/1	'25/4/1, ..., '25/4/1	
1	242	하3	'25/4/1, ..., '25/3/2	'26/1/1, ..., '26/3/2	
1	242	하2	'26/4/1, ..., '26/3/3	'27/1/1, ..., '27/3/3	
1	242	하1	'2/4/1, ..., '2/3/6	'28/1/1, ..., '28/3/6	
1	244	상1	종신연금에 가입한 후 인출하면 4.4%(80세 이후 3.3%)의 세율이 적용된다.	중도해지가 금지된 종신연금에 가입한 후 인출하면 3.3%의 세율이 적용된다.	
1	244	상5	4.4%*	3.3%	
1	244	상6	* 80세 이후 인출시 3.3%		
1	245	하 12	2025년에 61세인 이사례씨는 2020년 3월 4일에	2026년에 61세인 이사례씨는 2021년 3월 4일에	
1	245	하 11	2025년	2026년	
1	245	하7	2025년	2026년	
1	245	하6	2020년 3월 4일에 개설되었고 2025년	2021년 3월 4일에 개설되었고 2026년	
1	245	하1	2025년	2026년	

1	246	상1	2025년	2026년	
1	246	하3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1	249	상 10	(실제 연금수령 연차가 10년을 초과 하면 퇴직소득세 40% 절감)	실제 연금수령연차가 11년~20년 이하인 경우 퇴직소득세의 40%, 21년 이상인 경 우 50% 절감)	
1	240	하2	2012. 3. 1.	2013. 3. 1.	

첨부 1

구 분	2022	2023	2024	전년비 증가율(%)	비중(%)
보험	113.9	115.4	115.5	0.1	64.1
신탁	15.9	15.4	14.7	-4.5	8.2
펀드	22.5	28.9	40.4	39.8	22.4
기타	8.5	9.1	9.5	4.4	5.3
합계	160.8	168.8	180.1	6.7	100

첨부 2

업권	적립금		실적배당상품	
	금액	점유율	금액	비중
은행	73.5	60.6	23.1	31.4
증권	41.8	34.4	25.2	60.2
보험	6.1	5.0	0.9	15.1
합계	121.4	100.0	49.1	40.5

제3장 사적연금제도 제3절 역모기지연금

	쪽 수	줄 수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1	267	상2	2025년 2월 현재	2025년말 현재	
1	267	상3	13만 7명에	15만명에	
1	267	상4	122만 원의	127만 원의	
1	267	상5	2025년 2	2025년 11	
1	267	상6	61.9%	60.9%	
1	267	상7	22.8%	22.4%	
1	267	상9	70%	70.6%	
1	267	상 10	22%	29.2%	
1	267	하1	새로 추가	2025년에 공시가격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소유자가 부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월지급금(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민간 역모기지론이 최초로 출시되었다. 민간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상품인 관계로 보증료나 대출금리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보다 높다는 단점은 있지만, 고가주택 소유자가 평생 주택에 거주하면서 노후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연금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17>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주택연금과 민간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종신행 주택연금의 주요 특징을 비교하고 있다.	
1	268	상1	<표 3-17> 전체	첨부 1의 표로 대체	
1	269	하2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65세 이상인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주택 가격이 2억 원 미만인 경우 우대방식 주택연금이 적용된다.	부부 중 1인이 기초연금수급자이고 부부 합산 1주택자이면서 시가 2억 5천만 원 미만인 집을 소유한 사람은 일반 주택연금 가입자보다 월수령액이 약 18%(77세 가입자 기준) 많은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시가 1억 8천 만 원 미만인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는 일반 주택연금 가입자보다 약 23% 높은 월수령액을 수령할 수 있다(2026년 6월 이후 시행).	
1	270	상2	주상복합건물	복합용도주택(상가겸용주택)	

1	271	하5	2억 원 미만인	2억 5천만 원 미만인	
1	272	상9	[일반 주택연금] 초기보증료 1.5% 연보증료 0.75%	초기보증료 1% 연보증료 0.95%	
1	272	상9	[우대형 주택연금] 초기보증료 1.5% 연보증료 0.75%	초기보증료 1% 연보증료 0.95%	
1	272	상12	최대 21%까지 증가	약 18%(주택 시가가 1억 8천만 원 미만인 경우 약 23% 증가)	
1	274	상9	미리 정한 사유가	사전에 정한 사유가	
1	274	하2	대상연령은	대상 연령은	
1	275	상6	바꾸는 것도	변경하는 것도	
1	275	상8	매월 수령금액이	월지급금이	
1	276	하11	주택가격의 1.5%, 연보증료는 대출원리금잔액의 연 0.75%이다.	주택가격(시가)의 1%, 연보증료는 대출원리금잔액의 0.95%이다.	
1	277	하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비 교육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비, 교육비 담보주택정비사업분담금, 소상공인 대출금 상황 	
1	278	상2	45%	50%	
1	278	상3	금액은	금액을	
1	278	하10	표 3-25 업데이트	첨부 1로 대체	
1	280	상13	주택가격이	주택가격(시가표준액)이	
1	281	하1	2022년 기준	삭제	
1	281	상9	<p>2024년 5월 20일부터 담보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실버타운(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복지시설)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되었다.</p> <p>가입자는 해당 사유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입증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부부 모두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더라도 주택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다</p>	<p>2024년 5월 20일부터 담보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실버타운(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복지시설)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되었다.</p> <p>가입자는 해당 사유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입증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부부 모두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더라도 주택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다</p>	
1	283	하4	새 문단 추가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이후 55세 이	

				상 자녀가 동일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 가입을 희망할 경우 자녀가 보유자금 등으로 부모의 주택연금 채무를 전액 상환할 수 있다(2026년 6월 이후 시행). 과거에는 주택연금 가입자 및 그 배우자에 한하여 주택연금 채무를 상환할 수 있었다.	
1	284	상5	철회기한이 지났더라도 3년 이내에 주택연금을 해지하면 초기보증료의 일정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주택연금을 받고 있는 가입자는 가입 이후 3년 이내, 신규 가입자는 1회 월지급금을 받는 날로부터 3년 이내 주택연금을 해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초기보증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철회기한(첫 주택연금 수령일) 이후 30일 이내에 주택연금을 해지하면 초기보증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철회기한 후 5년 이내에 주택연금을 해지하는 경우 다음 표의 예시와 같이 경과기간에 비례하여 초기보증료의 일정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1	289	하2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시가 2억 원 미만의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주택연금 월수령액이 20%까지 증가할 수 있다.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시가 2억 5천만 원 미만의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주택연금 월수령액이 약 18%(1억 8천만 원 주택은 23%) 증가할 수 있다.	

첨부 1

연령	주택가격											
	1억원	2억원	3억원	4억원	5억원	6억원	7억원	8억원	9억원	10억원	11억원	12억원
55세	156	312	468	624	780	936	1,092	1,248	1,404	1,560	1,716	1,872
60세	210	421	632	842	1,053	1,264	1,475	1,685	1,896	2,107	2,318	2,528
65세	252	505	758	1,011	1,264	1,517	1,770	2,023	2,276	2,529	2,782	3,035
70세	307	615	923	1,231	1,539	1,847	2,155	2,462	2,770	3,078	3,386	3,414
75세	381	762	1,143	1,525	1,906	2,287	2,669	3,050	3,431	3,666	3,666	3,666
80세	483	966	1,449	1,932	2,416	2,899	3,382	3,865	4,060	4,060	4,060	4,060

<표 3-17> 주택공사 주택연금과 민간 주택연금 비교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민간 주택연금(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
신청자 연령	부부 중 1인 55세 이상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	부부 모두 55세 이상 공시가격 12억 원을 초과 주택(소유기간 2년 이상 및 실거주)
대출 한도	6억 원	월지급금의 현재가치와 주택가격의 50% 중 작은 금액(최대 15억 원)
적용금리	변동금리(CD+1.1%, COFIX+0.85%)	고정금리(국고채 10년+1.3%)
초기보증료	주택가격(시가)의 1.0%	주택가격(시가)의 2.0%%
연보증료	보증잔액의 0.95%	대출잔액의 1.25%
상환 방법	사망 후 주택매각대금으로 상환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 처분(신탁형)
운영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보증)	하나생명보험(하나은행 중개)